

□ 유치원·어린이집·초중고교 금연 구역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)

1) 근거 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6항 : 유치원·어린이집·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
※ ~'24.8.16일까진 종전 규정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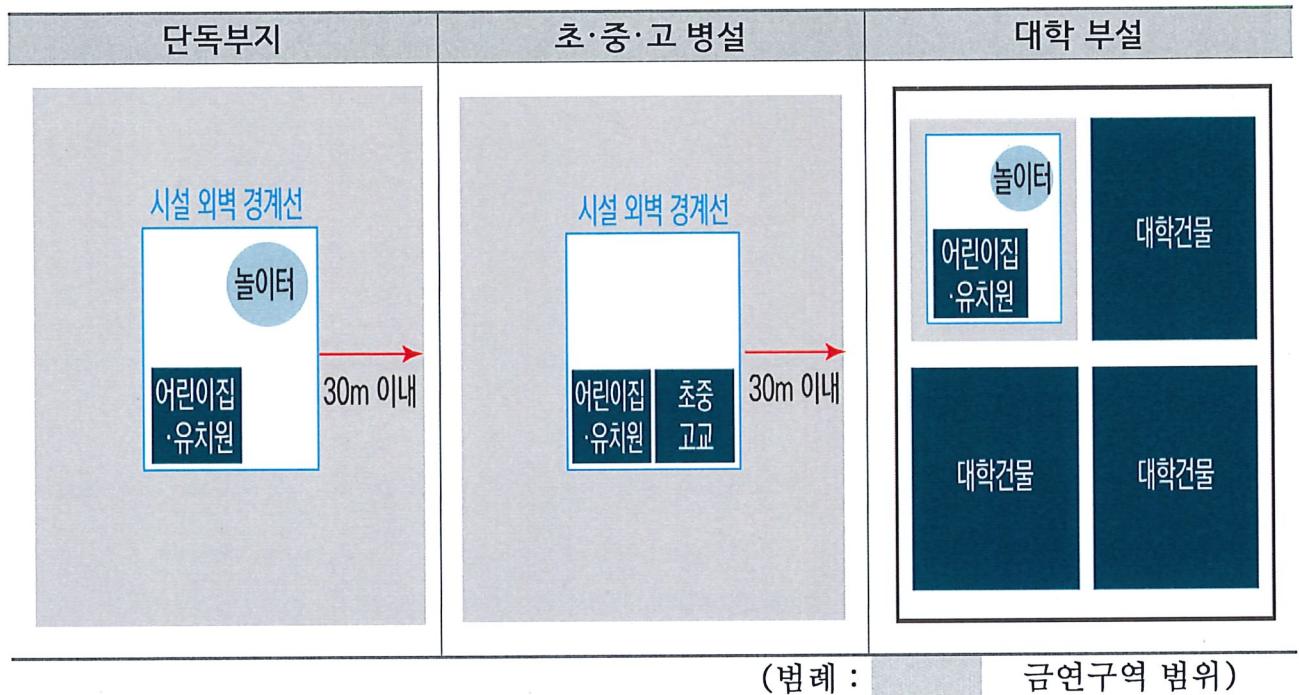
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〉	
현행	개정('24.8.17일부터 시행)
<p>⑥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<신설 2017. 12. 30.></p> <p>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<u>1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</p> <p>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<u>1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</p>	<p>⑥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<u>3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</p> <p>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<u>3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</p> <p>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<u>3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</p>

2) 어린이집·유치원 시설경계 기준

① 대지를 포함한 단독건물인 경우

- 유치원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 용지 및 어린이집 용지(놀이터 등 부속시설 포함)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미터 이내
 - *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 및 제9호에 의거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병설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미터 이내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부설인 경우 해당 건물(놀이터 등 전용 부속시설 포함)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미터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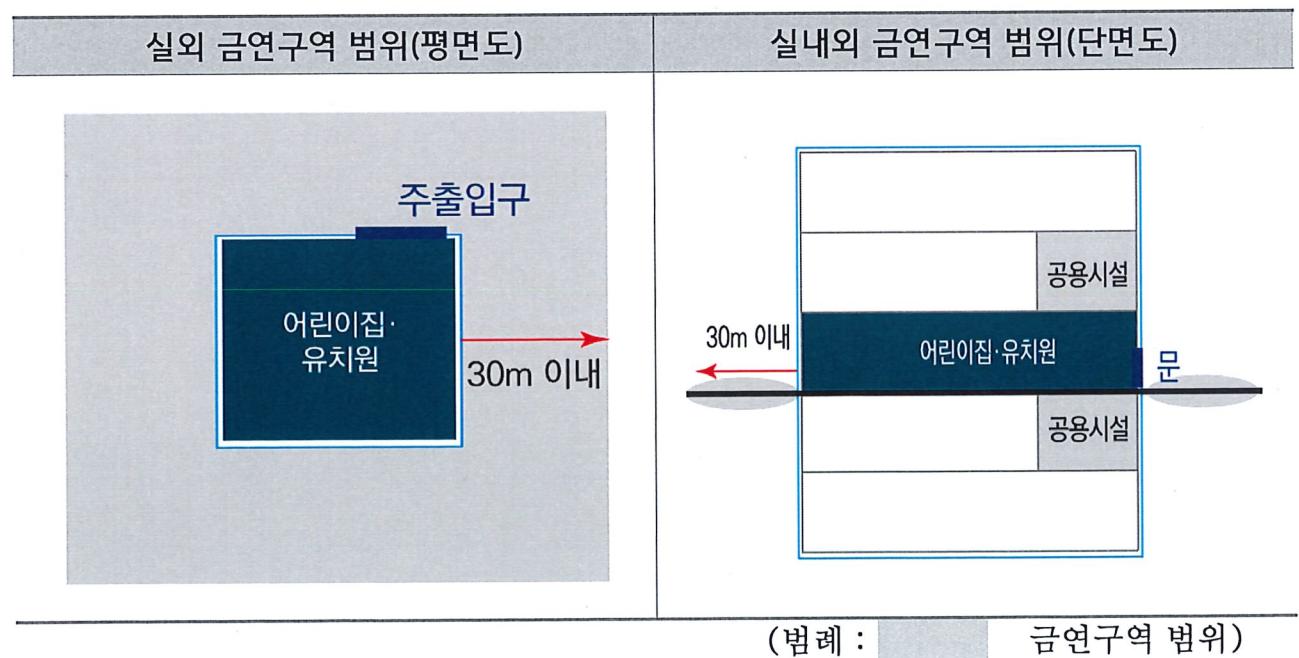
* 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7호에 의거 교사(해당 건물)만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함



②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등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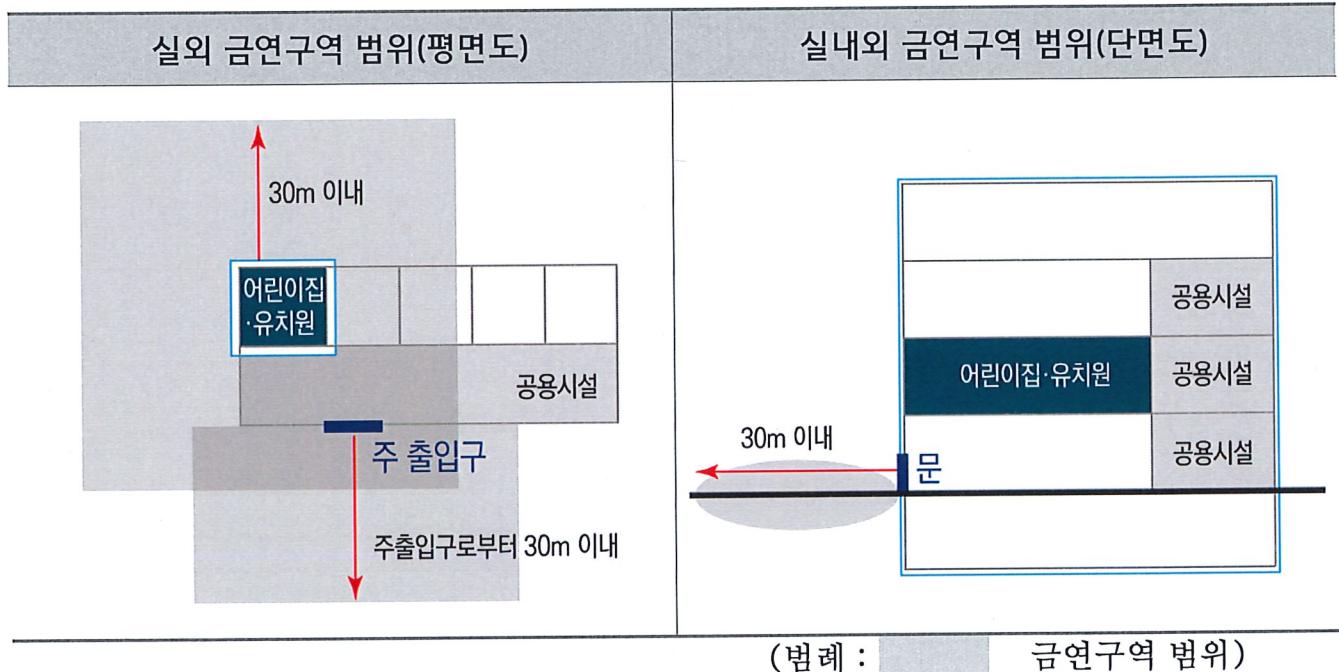
- 해당 층의 전체 면적 사용

- (실외)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미터 이내
- (실내) 동일 건물 해당층, 상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·화장실·복도·계단·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



- 해당 층 부분 면적 사용

- (실외) 사용 면적(사용호실)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(비상구 등)로부터 30미터 이내
- (실내) 동일 건물 내 해당 층, 상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·화장실·복도·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
- 다만,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해당층 사용부분과 주출입구를 달리하고 내부 벽면이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사용호 주출입구 이용범위로 한정



* 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의 범위

- 도로법에 의한 보도(歩道) 및 차도, 공개공지(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), 동일 건물에 있는 주차장, 화장실, 복도, 계단, 인접건물의 통로 등
-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공간은 제외